

	<b>규정</b> <b>기획 예산위원회 규정</b>	문서번호	TWP-B212
		제정일자	1997. 04. 01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7
		페이지	1/3

작성부서	기획 예산처	제정일자	1997. 04. 01.
------	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담당	기획예산처장	교무학생처장	산학입학처장		사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

	규정	문서번호	TWP-B212
		제정일자	1997. 04. 01.
기획예산위원회 규정	개정일자	2025. 10. 14.	
	개정번호	7	페이지

	<b>규정</b> <b>기획 예산위원회 규정</b>	문서번호	TWP-B212
		제정일자	1997. 04. 01.
		개정일자	2025. 10. 14.
		개정번호	7
		페이지	3/3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기획 및 예산수립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,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의 심의, 조정 기능을 명확히 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행정부서 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**제3조(기능)** 기획예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, 평가 및 개선

- 가. 대학의 사명, 비전, 교육목표 등 교육가치 체계에 관한 사항
- 나. 대학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, 추진과제, 연차별 세부실행 계획에 관한 사항
- 다. 대학 발전계획에 반영된 재정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
- 라. 대학 발전계획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
2. 예산 편성 및 조정

- 가. 예산 집행 실적 분석 및 평가

3. 대학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한다.

**제5조(주관부서)** 위원회의 운영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다.

**제6조(경비)** 위원회의 회의 경비는 대학 예산으로 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